

제2589호
2018.07.2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제1420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4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142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고 시

제2018-81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9
제2018-82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10

● 공 고

제2018-533호 :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5차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1
제2018-542호 : 지방별정직(전문위원)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1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0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0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조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삭제

참 고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참 고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조항 규정 조례 현황	
연 번	기초자치의회명	조 례 명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4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5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7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현행「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전국 기초지방의회의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기초지방의회는 7곳 밖에 되지 않음
-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임에 따라 명문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고, 의회 운영상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임에 따라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6조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를 삭제함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0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 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생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u>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③ ~ ④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③ 삭제 <2013.7.1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 2018.5.29.] 제15조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
 [시행일 : 2018.4.19.] 제68조제1항제1호의6, 제68조제1항제1호의7, 제68조제2항제12호의2, 제68조제2항제12호의3, 제68조제2항제12호의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훼손으로 미관 저해 및 일부 다양한 용기 사용으로 인해 야간 수거작업시 능률이 저하됨.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 신설 조항을 반영, 깨끗하고 통일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무상설치하여 올바른 배출문화 형성 및 감량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상위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무상설치에 대한 규정 신설 (제12조제4항)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제18조제2항)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0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비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u>편의·위생용품의 지원</u>)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u>편의·위생용품</u>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u>관리운영비 등의 지원</u>) ----- ----- <u>편의·위생용품비</u>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상위 관계법령 [해당부분 발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으로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변경 (제13조)

-【변경전】「편의·위생용품의 지원」“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변경후】「관리운영비 등의 지원」“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비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8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신당동 233-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4	2018.07.25.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신당동 236-394 외 4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85	2018.07.25.	다산로33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82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40	2018.07.25.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7길 2	2018.07.25.	건물철거
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2길 17	2018.07.25.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0길 20-15	2018.07.25.	건물말소
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9-11	2018.07.25.	건물말소
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4	2018.07.25.	건물철거
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 21	2018.07.25.	건물말소
8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7-11	2018.07.25.	건물말소
9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아길 28-2	2018.07.25.	건물철거
1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65-1	2018.07.25.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533호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5차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2호(2008.01.3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주택과-5428(2008.03.26)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4호(2011.06.2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중구 고시 제2016-73호(2016.05.25)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결정, 주택과-28047호(2016.09.09)로 사업시행 2차 변경인가, 주택과-40253호(2016.12.20)로 사업시행 3차 변경인가, 중구 고시 제2017-28(2017.4.19.)로 사업시행 4차변경 인가된,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5차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인가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5차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 및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0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 07. 25. ~ 2018. 08. 08.

나. 공람장소 : 중구청 주택과(☎ 02-3396-5723) 및 조합사무실(☎ 02-2237-4881)

다. 사업시행계획

- 1) 사업명칭 :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위 치 :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
- 3) 시행면적 : 8,119㎡
- 4) 시 행 자 :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거부)
- 5)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6) 건축계획 : 아파트 3개동 176세대(임대아파트 없음) 및 부대복리시설
- 7) 주요변경내용 : 소공원1 공원조성계획 변경, 101동 남측 보강토옹벽 변경 및 산벽 추가, 음식물전용수거공간 위치변경, 기타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내부마감 변경 등 경미한 변경

라. 관계도서 : 생략(중구청 주택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542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전문위원)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전문위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시험일정

가. 임용분야

임용직위	채 용 직 급	채용인원	근 무 지
구의회 전문위원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면접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18. 8. 7.(화)~ 8. 9.(목)	‘18. 8. 10.(금) 예정	‘18. 8. 14.(화) 예정	‘18. 8. 20.(월) 예정	‘18. 8. 24.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주소 및 성별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학위 : 법학, 행정학

※ 경력인정 범위 : 입법 및 법제연구·조사·분석, 예산, 결산관련 업무

3.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및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다. 면접 합격자 발표

-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8. 8. 7.(화) ~ 8. 9.(목)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중구청 총무과(구청 본관 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중구 수입증지 10,000원 인증
 - ※ 중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인증
- 이력서 1부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3.5cm×4.5cm)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 위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한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3396-4514)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원 본)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첨부란	주 소	(전화)											
	학 력 (최종)	대학교 이 하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대학원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채용분야 및 응시직급					
								전문위원 분야 지방별정직5급상당(전문위원)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부 본)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 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3.5×4.5cm)
	*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채용분야 및 응시직급	
								전문위원 분야 지방별정직5급상당(전문위원)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표					성 명	(한글)	사 진 (2) 위와동일한 사진
	* 응 시 번 호					생년 월일		
	채용분야 및 응시직급	전문위원 분야 지방별정직5급상당(전문위원)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전 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집전화, 휴대전화) 모두 기재
- ② 주 소: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기재
- ③ 학 력: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 기재
- ④ 「*」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⑤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는 서울시 중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후 접수

<< 주 의 사 항 >>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동일원판)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총무과 인사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 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안내받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세)	
	한자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병 역	☐ 병역필 (기간 :) ☐ 병역 미필 ☐ 병역 면제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서류전형 평가항목	연간 소득액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참조]	원		부양가족원 수 [주민등록 등본]	명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 없음		중구 전입일 [주민등록 초본]	년 월 일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0% 가산대상 ☐ 5% 가산대상 ☐ 해당 없음		※ 일반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는 서류전형평가항목 미기재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분야)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기제)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논문, 저술, 價 등					

□ 경 력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담당업무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류	등록번호
어학	종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제한·합격 무효 등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② 중구 전입일 : 주민등록상 최근 전입일 기준으로 기재(※타지역 주민 미기재)
(※현재 기준 연속거주한 날짜로 기입하며, 타지역 전출 내역이 있을 경우 이전 중구 거주내역은 기산하지 않음.)
 - ③ 부양가족원 수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구성원 중 만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와 만19세 이하 미성년자녀 수의 합을 기재(응시자 본인 제외)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 인정
 - ④ 연간소득액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상 소득금액(근로소득/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으로 기재
 - ⑤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대상자의 경우 표기
 - ⑥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보호 대상자의 경우 증명서상 가점 비율 표기
3. 각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최초게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 효력을 인정합니다.

작성항목	확인서류	발급방법
중구전입일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내역 포함)	[방문]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부양가족원 수	-주민등록 등본	
연간 소득액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로 대체	[방문] 세무서, 구청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중 한가지) 1)한부모가족 증명서 2)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자활근로자 확인서 5)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방문] 구청 복지급여담당부서, 동주민센터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방문] 보훈청, 구청, 동주민센터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전입일자, 주민등록 세대 구성정보, 연간소득,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채용심사를 위한 평가자료 및 사실 확인 용도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필수 개인정보 미제공시 지원불가 -평가항목 정보 미제공시 평가점수 감점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거부에 따라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18년 월 일

정보제공주체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공고문 별지 제6호 서식〉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

<반드시 1장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	--

○ (학력 및 전공) ※ 고졸 이상 학력 중 응시자가 소개하고 싶은 학력 3건 이내 기재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입학년월	졸업년월

○ (주요 경력)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경력 중 응시분야와 관련하여 응시자가 소개하고 싶은 근무기간 1년 이상 주요 경력을 3건 이내 기재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시작일	종료일	근무기간

※ 근무경력기간: '00.00.00 ~ '00.00.(면접시험일) 기준 / 근무기간은 15일 초과 시 1개월로 인정

○ (자격증·외국어) ※ 응시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외국어 능력 기재

구 분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득일	교부기관
관련 자격증				
구 분	자격(시험)명	등급(점수)	취득일(유효기간)	발급기관
외국어 능력				

○ (기타 수상, 실적, 능력 등)

※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 실적,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